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중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521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30.

발 의 자 : 김중로 · 박찬대 · 김관영

김성수 · 이동섭 · 장정숙

정재호 · 안규백 · 이종걸

김동철 · 장병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·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.

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·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·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71조).

법률 제 호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항 중 “5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